

제 266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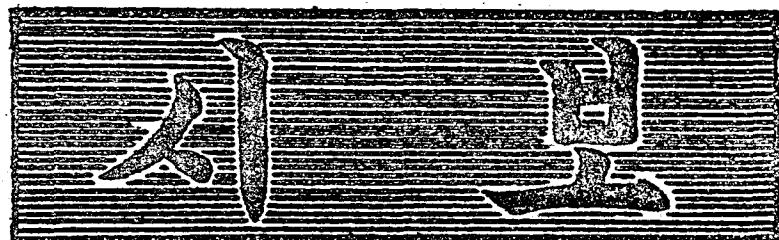
1972. 8. 8.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양 백 식

편집: 공보실장 김찬호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차례

### ◎ 조례

제 715 호 서울특별시립 새마을노인회관설치 조례 ..... 3

제 716 호 서울특별시 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 지

급조례 ..... 3

### ◎ 사령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립새마을 노인회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7일

###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715 호

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설치조례  
제1조(목적)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노인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용산구호창동산9번지의 1호에 둔다.

제3조(공무원) ①노인회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전항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불량건물개량사업보조금 지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8월 7일

### ⑥ 서울특별시조례 제 716 호

서울특별시불량건물

개량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판내의 불량건물을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보조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불량건물

불량건물이라함은 도시미관을 해하는 노후 퇴색한 건물과 지붕, 담장, 건물 주변의 벤소, 축사등을 말한다.

#### 2. 건물개량

건물개량이라함은 도시미관을 해하는 건물을 단장하여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체의 미화작업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지역)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정부시책상 도시경관을 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중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 4 조 (대상전물) 불량건물 개량대상은 건물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개량을 말한다.

1. 지붕개량
2. 노후벽체보수 및 단장
3. 담장보수 및 신축
4. 옥외변소 보수
5. 옥외축사개량

제 5 조 (지급대상) 보조금지급대상자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 있는 건물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자
2.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6 조 (지급기준) 보조금지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보조방법) 보조금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제 8 조 (개량방법)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자는 그 이외의 사업을 차비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당시 기히

지급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 사령

◎ 1972. 8. 4.

환경순찰관 지방행정사무관 박종우  
제 2 담당 서대문구 주택과장에 보함

서대문구 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민응식  
종로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철  
환경순찰관 제 2 담당에 보함

◎ 1972. 8. 5.

종로구 지방토목기사 유성동  
수도사업소 수도관리사업소 과연근무를  
명함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지방농림기사보 정선용  
녹지과 근무를 명함

양묘장 사방관리소 지방농림기원보 송기남  
근무를 명함

토목과 행정과 지방토목기사보 장동립  
과연근무를 명함

환경순찰관 행정과 지방토목기사보 신홍섭  
과연근무를 명함

민 방 위 파 지방토목기사보 이 강 수  
환경순찰관 파견근무를 명함

충북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조 건 부 지방행정주사보 강 영 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조선부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